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 송명화, 권영희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양, 김제리,
김화숙, 박기열, 봉양순,
오현정, 이광성, 이병도,
이상훈, 이정인, 채유미,
최 선, 한기영, 홍성룡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권고 의결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·불편 요인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 ('20. 9. 7.)
- 특히 예약취소 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고,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의 과도한 공제와 운영자 편향의 사용료 납부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.
- 이에 예약취소 시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이용료 반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함(안 제1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
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
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①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 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 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문서번호	2021012500000004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송명화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1.25	
회신일 : 2021.02.02	내용문의 : 02-2180-7933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이용료를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 - (제1호)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
 - (제2호)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
 - (제3호)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 - (제4호)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제19조 제1항에서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이용료의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입장료·이용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환불 조건인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발생빈도, 사용일 전·후의 취소 시점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예산분석팀장 민향식

분석관(주무관) 공도연

☎ 02-2180-7933

e-mail : ehds0@seoul.go.kr